

---

# **202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**

---

**2026. 1.**

**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
지역산업협력국**

# 순 서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     | 3  |
| 1.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    | 4  |
| 2.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     | 4  |
| 3. 사업 운영방향 및 체계      | 5  |
| 4.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| 6  |
| II. 개요               | 8  |
| 1. 사업계획서(증빙서류 일체 포함) | 9  |
| 2. 제출기한 및 방법         | 9  |
| 3. 작성 유의사항           | 10 |
| 4. 작성요령              | 10 |
| III. 심사방향 및 기준       | 11 |
| 1. 심사방향              | 12 |
| 2. 심사기준              | 13 |
| 3. 세부 작성 가이드         | 14 |
| 4. 지원금 집행기준          | 18 |
| 붙임.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| 25 |

## I. AI 특화 공동훈련센터

## 1

#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

### □ 사업 정의

- 기업, 사업주단체, 대학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(컨소시엄)을 맺고 기관이 보유한 훈련·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
- 협약을 맺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



## 2

# AI 특화 공동훈련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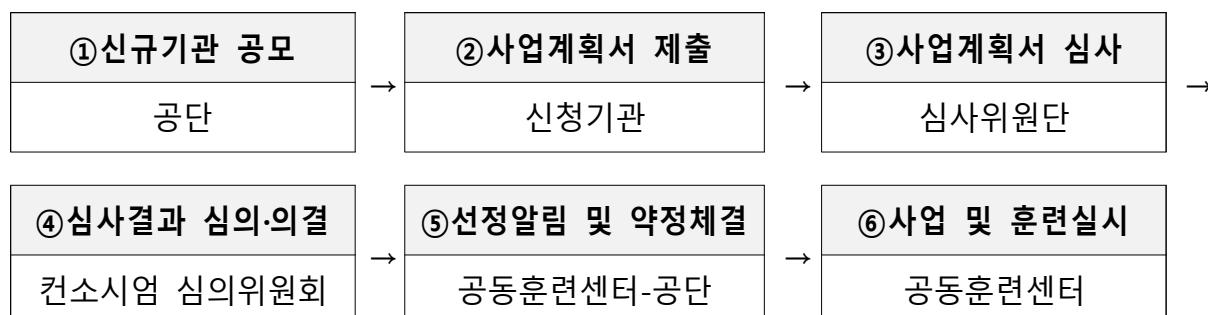
### □ 사업 정의

- 권역 내 중소기업 AX 전환 및 노동자의 AI 직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훈련을 공급하고 AI 기반 직무·공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

### □ 사업 목적

- 지역기업 및 재직자 대상으로 AI 특화 훈련을 지원하고 훈련 종료 후에도 기업이 AI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권역 내 AI 확산 및 AX 전환을 지원

### □ 선정 절차



### □ 운영방향

-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 내 중소기업 맞춤형 AI 특화 훈련 제공
- 기업 진단 및 워크플로 분석을 통해 훈련부터 코칭, AX 확산 활동 등 확산지원까지 종합 패키지 형태로 AX 전환 지원

### □ 교육·훈련 운영

- 수요기업의 AI·AX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한 훈련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훈련 개발·운영

### □ 확산지원

- 훈련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AI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

#### <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운영체계>

| 지원<br>서비스 | 진단·분석                      |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산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AI 활용 수준 진단<br>워크플로 및 직무분석 | AX 전환 수요에<br>부합하는 훈련 설계·운영         | 중소기업 AX 전환<br>지원 프로그램 운영   |
| 훈련        | - 워크플로 분석 및 AI<br>활용 수준 진단 | - AX 일반훈련<br>- AX 전문훈련<br>- PBL 훈련 | - 코칭제도 운영<br>- AX 확산 활동 지원 |
|           | AX 일반훈련                    | AI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및 일반직무 적용 훈련    | 직무기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훈련 |
|           | AX 전문훈련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기업 진단·분석

- (기업진단) 기업의 조직·문화, 공정, 인프라·데이터, AI 역량 등 AI 도입을 위한 기업의 준비 수준을 진단

※ 기업진단을 위한 도구 및 가이드라인은 공단에서 제공 예정

### < 기업진단 영역(예시)>

| 진단 영역   | 주요내용  |
|---------|---|
| 조직/문화   | - 경영진의 AI 도입 의지, 전담 조직 유무, 변화 관리 역량             |
| 공정/업무   | - 데이터가 발생하는 주요 공정 식별, AI 적용 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업무 도출 |
| 인프라/데이터 | - 클라우드 환경 여부, 데이터 적재 방식(정형/비정형), 데이터 클렌징 수준     |
| AI 역량   | - 현재 활용 중인 솔루션 및 구성원의 기초 리터러시 수준                |

- (워크플로 분석·재설계) 기업의 주요 직무 및 업무 프로세스별 병목 및 비효율 단계 파악 등을 통한 AI 활용 가능 영역 도출
  - AI 활용 능력 향상을 전제로 업무 재배열, 자동화, 역할 재정비를 통한 업무 최적화 워크플로 재설계
- (훈련 로드맵 수립) 워크플로 재설계 실현을 위한 단계별 AI 훈련 로드맵(훈련체계 · 연간 훈련계획 등) 도출

### < 제조 품질관리 워크플로 재설계 실현을 위한 훈련 로드맵 (예시)>

| 단계 | As-Is       | To-Be       | 훈련 로드맵(훈련과정) 도출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육안 검사       | AI 비전 검사    | 공정별 불량이슈 AI 비전 해석과정  |
| 2  | 불량 수기 기록    | 불량데이터 자동 저장 |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불량 원인 사후 분석 | AI 패턴 분석    |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정 |
| 4  | 보고서 수작업 작성  | 자동 리포트 생성   |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과정 |

## □ AI 특화 훈련

- (AX 일반훈련) CEO 포함 재직자 대상 AI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, 이해도 향상 및 AI 효용성 체험을 위한 기초·보편 교육
- (AX 전문훈련) 기업별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직무·공정·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AI-業 활용 훈련

### < AX 일반/전문 훈련 비교 >

| 구 분  | AX 일반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X 전문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훈련내용 | - AI 인식 제고, 인사이트 제공 등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직무·공정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실무 중심 훈련   |
| 훈련방법 | - 집체, 원격대체, 세미나, 강연 등 다양한 형태 중 승인 받은 방법으로 운영 | - 집체, 원격대체 훈련방법 중 승인 받은 방법으로 운영 |
| 훈련시간 | - 최소 1시간 이상<br>* 훈련비 환급과정은 최소 4시간 이상         | - 최소 18시간 이상, 실습 중심             |
| 지원대상 | - 재직자, 관리자, 채용예정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재직자, 채용예정자                    |

※ 채용예정자란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 자로 채용 약정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

- (PBL 훈련) 과제수행형 PBL 훈련과 문제해결형 PBL 훈련으로 AI 기반 업무개선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훈련
- ※ PBL 훈련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 필수 선행되어야 하므로 선정 후 별도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, 사업계획서 작성 불필요

## □ 확산지원

- (코칭) 훈련 종료 후 실제 현업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·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밀착형 코칭 실시
  - 실시간 채널(모바일 메신저 등), 비대면 화상회의, 현장 방문 코칭을 통해 문제해결 및 PBL 결과물 고도화 지원
- ※ 훈련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훈련 담당 교·강사를 AI 코치로 우선 매칭 지원
- (AX 확산 활동) AX 이노베이션 포럼, AI 멘토링 등 AX 확산 활동 운영을 통해 권역 내 AI 도입 및 AX 확산을 지원

## II. 개요

## 1

## 사업계획서(증빙서류 일체 포함)

### □ 구성(총 5종)

- ①사업신청 공문, ②사업계획서(A권), ③사업계획서(B권), ④지원금 신청내역(엑셀파일), ⑤증빙자료(일괄) 등 필수 제출

- ▶ ①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= 사업신청 공문  
⇒ (한글\_파일명) "1.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 신청\_신청기관명"
- ▶ ② 사업계획서 A권 = 신청서, 사업계획요약서 등  
⇒ (한글\_파일명) "2. 사업계획서(A권,초기)\_신청기관명"
- ▶ ③ 사업계획서 B권 = 훈련과정별 계획서 등  
⇒ (한글\_파일명) "3. 사업계획서(B권,초기)\_신청기관명"
- ▶ ④ 지원금 신청내역 = 인프라 지원금 및 훈련비 신청내역 등  
⇒ (EXCEL\_파일명) "4. 지원금 신청내역(초기)\_신청기관명"
- ▶ ⑤ 증빙자료 = 증빙자료 별도 압축파일  
⇒ (압축파일명) "5. 증빙자료"

※ 전자우편 제목은 "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청\_신청기관명"으로 기재하여 송부

※ ①사업신청 공문 직인 필수, ⑤증빙자료는 A, B권 요청 서류 일괄 제출

### □ 규격

- (여백) 위쪽·아래쪽 각 15, 왼쪽·오른쪽 각 20, 머리·꼬리말 각 10
- (본문) 13포인트, 장평 100, 줄간격 150, 휴먼명조체, 개조식 작성
  - 인용 및 데이터 출처는 해당 면 본문에 “※”로 인용출처를 명시

## 2

## 제출기한 및 방법

### □ 제출기한

- 2026년 2월 23일(월) 14:00까지

### □ 제출방법

- 전자우편으로 사업신청 공문 포함 필요서류 일체 제출
  - 전자우편 주소 : ajax@hrdkorea.or.kr

### 3

### 작성 유의사항

-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반드시 사업계획서 상의 서식을 준수하고 목차 및 페이지 기재
- 고유식별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, 주민등록번호 등은 뒷자리 첫 번째 숫자까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표(\*\*\*\*\*\*) 처리

### 4

### 작성요령

#### □ 사업계획서 서식

- 심사에 활용되는 사업계획서는 “초기” 문구를 표지에 반드시 삽입
- 사업계획서 서식(붙임)을 토대로 작성하고, 일부 항목은 제공된 엑셀서식을 활용하여 작성
  - 엑셀서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 시(수식 등) 심사에 불이익 또는 향후 사업 추진과 훈련과정 개설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서식 임의 수정 금지(★엑셀 시트 간 수식이 모두 연동되어 있음)
  - 훈련시설 및 장비, AI화산지원비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비교 견적서(2개 이상)를 첨부하여야 하며, 미첨부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※ 단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불요
- 신청내역이 시장가격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거나 과도하게 비용을 산출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### **III. 심사방향 및 기준**

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I 역량 중심 우수기관 선정

- 지역·산업별 분포를 고려하여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

| 구분              | 권역(수행지역)        | 선정 기관 수(예정)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총 20개소(거점형 포함) |
| AI 특화<br>공동훈련센터 |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| 권역별 최소 2개소 이상  |
|                 | 동남권(부산, 울산, 경남)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대경권(대구, 경북)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중부권(대전, 충북, 충남)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호남권(광주, 전남)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전북권             |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 |
|                 | 강원권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제주권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공동훈련센터 별도 선정·운영

- AI 훈련의 전반적인 훈련 품질 제고 및 권역 내 AX 전환을 유도·선도하기 위한 거점 공동훈련센터 지정·운영
  - (운영규모) 사업계획서 내 거점 공동훈련센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개소 내외 선정(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선정심사시 병행하여 심사)

**< 거점 공동훈련센터 주요 수행업무 >**

| 주요 수행업무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
| AI 훈련모델 보급 | - AI 표준 훈련·역량모델 개발 및 권역 내 공동훈련센터 공유       |
| 역량 고도화 지원  | - 권역 내 공동훈련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과정 설계·운영 노하우 전수 |
| AI 확산 지원   | - 권역 내 AX 전환 성과·실패 발굴·확산 활동 실시            |

- 총점 60점 미만의 경우 미선정 가능

| 영역               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 심사목적(문항)   | 방법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|
|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 |    |
| 사업<br>역량<br>(35) | 사업목적의 타당성(10)            | 5   | - 신청한 사업의 목적, 기대효과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-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수행 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사업운영 역량(25)              | 5   | - AX 전환 운영전략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- 신청기관의 재정 건전성   | 정량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 - 자체 보유 시설·장비 및 전문가 POOL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- 훈련 운영 경험(최근 3년 교육 실시 횟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량 |
|                  | 조직 및 인력 구성(10)           | 5   | - 수행 기관의 조직, 사업 책임자, 전담자 등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능력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- 내부 전문가(AI 및 산업 전문가) 확보방안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량 |
|                  | 인프라 구축 및 활용(10)          | 10  | - 시설 및 장비 구축계획의 적정성(중장기 활용계획, 훈련계획, 지원금 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) | 정성 |
| 사업<br>운영<br>(45) | 협약기업(핵심기업 포함) 확보<br>(20) | 10  | - 지역·산업을 고려한 협약기업 구성·확보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- 지역·산업을 고려한 협약기업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량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- 협약기업과 기관의 전문성 연계방안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훈련목표(5)                  | 5   | - 당해 연도 훈련목표(연인원)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량 |
|                  | 수요조사 및 훈련계획(10)          | 10  | -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(로드맵, 추진 전략, 방법 등)수립의 적정성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(5)        | 5   | - 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·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확산지원(5)                  | 5   | - 코칭 등 확산지원 프로그램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가점<br>(최대5점)             | 5   | - 지역별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방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|                  | 지역별 주력산업 연계(3)           | 3   | -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방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성 |

- \* 선정은 심사위원회 심사,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순으로 실시하되,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가능
- \* 60점 이상인 경우 기본 선정 자격은 될 수 있으나, 해당연도 선정기관 수, 득점순위, 산업 및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선정 예정

| 심사영역         | 심사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법 |
|--------------|--|----|
| 훈련과정의<br>적정성 | 훈련목표 및 협약기업 수요와의 부합                        | 적부 |
|              | 해당 훈련과정의 과정설계, 훈련 운영계획, 교·강사,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|    |
|              | 해당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|    |

## &lt; 가. 조직 및 인력 구성 &gt;

 전담인력

-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을 전담하는 신청기관 소속의 관련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전담자로 구성
  - ※ AI 전문인력 1인을 포함하여 구성
  - ※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는 컨소시엄 사업 관련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

 직접계약

- 파견근로자는 전담자로 불인정(직접계약에 의한 경우만 전담자로 인정)

 인건비 지급 기준

- 신청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의 비율이 소속 전담인력의 30% 이상인 경우 인건비 지원 가능
  - ※ 예시) 전담인력이 4명인 경우 정규직 최소 1명 구성 필요

| 구분  | 전담인력 수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| 2명     | 3명     | 4명     | 5명     | 6명     | 7명     | 8명     | 9명     |
|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<br>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<br>자의 비율 30%(명) | 0.6(1) | 0.9(1) | 1.2(1) | 1.5(2) | 1.8(2) | 2.1(2) | 2.4(2) | 2.7(3) |

## [ 전담자 주요 역할 ]

- ① 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 수립, 교육과정, 교재 및 교보재 개발·보급 등의 업무
- ② 훈련생 관리 및 상담, 교·강사 선정 및 관리,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
- ③ 참여기업 발굴, 참여기업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
- ④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, 훈련 만족도 조사, 사후관리 등의 업무
- ⑤ 홍보물 제작 및 배포,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
- ⑥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, 사업 예산 관리, 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
- ⑦ 코칭, AX 확산 활동 운영 등의 업무
- ⑧ 정부부처 또는 공단, 허브사업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 등의 업무
- ⑨ 기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
## < 나. 협약기업 >

### □ 협약기업 기본요건

-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의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특화 공동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협약서 체결

#### < 협약기업 협약서 체결 및 관리 절차(예시) >

| 구 분  | 신청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약기업          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설명 | - 기업 방문, 워크숍, 간담회 등 개최                    | - 사업 이해 및 훈련수요조사 참여 |
| 협약체결 | - 협약기업 대표자와 공동훈련센터 대표자의 직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|                     |
| 유지관리 | - 훈련 참여 현황 및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훈련 참여, 만족도 조사 등   |

### □ 핵심기업

- 최소 30개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과 협약을 체결,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최소 10개 기업을 핵심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리

#### < 협약기업·핵심기업 구분 >

| 구 분     | 협약기업                    | 핵심기업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 수    | - 최소 30개 기업 이상 확보       | - 협약기업 중 최소 10개 기업 이상 확보 |
| 상시근로자 수 | -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 대상 | 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대상     |

## < 다. 훈련 운영계획 및 관리 >

### □ 훈련 기본요건

- 훈련유형별 최소 훈련시간(AX 일반 1시간, AX 전문 18시간) 이상, 훈련시설 면적은 최소 30m<sup>2</sup> 이상, 훈련생 1인당 1.5m<sup>2</sup> 이상 추가

※ 훈련비 환급과정은 최소 4시간 이상으로 훈련과정 편성 필요

### □ 훈련목표

- AX 전문훈련 연인원 100명 이상

- PBL 훈련 핵심기업(10개 이상)당 최소 1개 훈련 실시

※ AX 일반훈련의 경우 훈련 목표에 미포함되며 PBL 훈련은 공동훈련센터 선정 후 별도 절차에 따라 실시

## □ 훈련 수요조사

- 참여기업 대상 훈련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편성, 사업계획서에 훈련과정별로 수요조사 결과 기재

## □ 훈련 협약

-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공동훈련센터-참여기업 간 ‘협약서(별첨 양식)’ 작성

※ 협약서 제출 불필요, 자체 보관 및 선정 후 HRD-Net 전산 업로드 실시

## □ 훈련방법

-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하되, 원격대체 요구 및 수요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공단 심사를 통해 승인
- 집체훈련 방식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은 연중 심사를 통해 원격대체 훈련방식으로 변경 가능
- 원격대체 훈련방식의 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 구분, 훈련방법 ‘원격 대체’ 선택 유의

※ 장비 및 실습 등이 필요한 집체훈련은 원격대체 훈련방식으로 운영 불가

## □ NCS 자율적용

- NCS 훈련기준 자율 적용, 훈련비 산정을 위한 NCS 분류번호 및 수준 기재 필요

## □ 훈련비 지원 : NCS지원단가의 3배

- 예시) NCS지원단가가 5,000원인 경우 3배인 15,000원을 훈련단가로 설정하여 훈련비 지원

※ 「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공고」(제2024-114호) 참조

## □ 유의사항
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(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)의 재직자만 원칙적으로 훈련에 참여 가능
-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재직자의 경우 훈련 수료인원의 50% 한도 내에서 훈련 참여 가능하며, 훈련비는 80%만 지원
-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사재직자도 훈련 수료 인원의 20% 한도 내에서 훈련 참여 가능
- 법정의무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과 경영·회계·사무 분야 훈련과정은 인정 불가
- 사업주 훈련 등 타 정부지원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
- 훈련내용과 운영(수행)기관의 생산·제조품 연관성 등을 심사하여 훈련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결정
- 훈련 프로그램 일람표(엑셀파일), 사업계획서 B권(훈련 운영계획서), HRD-net 시스템 상의 훈련과정명 및 연번이 동일하여야 함  
※ 훈련정보가 상이할 경우 타 훈련으로 간주하여 훈련 승인이 반려될 수 있음

## < 라. 확산지원 >

## □ 코칭

- 훈련 종료 후 실제 현업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·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밀착형 코칭 실시
  - 실시간 채널(모바일 메신저 등), 비대면 화상회의, 현장 방문 코칭을 통해 문제해결 및 PBL 결과물 고도화 지원
- ※ 훈련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훈련 담당 교·강사를 AI 코치로 우선 매칭 지원

## □ AX 확산 활동

- AI확산지원비를 활용하여 사전에 사업비를 지원 받는 프로그램으로 포럼, 세미나, 강연 등 유연한 형태로 AX 확산 활동 운영
- 사업계획서(A권), 지원금 신청내역(엑셀)을 토대로 심사 실시

## < 마. 거점형 공동훈련센터(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) >

### □ 거점형 공동훈련센터 지정

-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청기관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·산업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
- 훈련 품질 제고 및 AX 확산 업무 추가 수행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지원(AI확산지원비 1억원 내외)

### □ 거점형 공동훈련센터 주요 수행업무

- (표준 훈련모델 개발) 산업 범용 AI 직무 융합 표준 훈련 및 역량 모델 개발·보급을 통해 권역 내 고품질 AI 훈련 상향 평준화 선도
- (공동훈련센터 지원) 권역 내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 및 운영 로드맵 수립 지원 등 훈련·운영 노하우 전수
- (확산 활동) 기업 AX 전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성과·실패사례 공유회, 우수사례 경진대회, AI 포럼 등 개최

4

### 지원금 집행기준

### □ 기본방향

- 총액 내에서 운영비, 시설·장비비, AI확산지원비 항목을 자유롭게 편성·집행

#### [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]

| 지원항목    |     | 연간 지원액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인프라 지원금 | 운영비 | 전담자 인건비<br>일반운영비             | 총액 내에서 지원항목별 자유롭게 편성 |
|         |     | 훈련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| AI확산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| AX 일반훈련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훈련비용    |     | AI확산지원비 또는 시간당 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원 | 시간당 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원    |
|         |     | AX 전문훈련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| PBL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전담자 인건비

- 전담자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,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적정 인력에 대해 지원 가능

### [ 인건비 지원 및 집행기준 ]

| 구분   | 주요 내용  |
|------|--|
| 지원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인건비의 사용내역은 사업 회계연도 중 전담자에게 직접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가 정부 회계연도와 다를 경우 매월 임금대장 등으로 산정한다.</li><li>○ 공동훈련센터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(이하, “정규직 등”)의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30 이상(소수점 이하 반올림)인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.</li><li>○ 전담자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관 실적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에 대해 지원한다.</li></ul>  |
| 집행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공동훈련센터 내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급여</li><li>- 공동훈련센터와 전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 등의 급여</li><li>- 전담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</li></ul></li><li>○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사회보험료: 국고보조금을 받는 직업훈련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다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기관 부담 인건비에 대해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지급 불가</li></ul></li><li>○ 지원받은 총인건비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담자의 인건비 차등지급 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는 컨소시엄사업 이외 타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환수조치 및 행처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</li></ul></li></ul> |

## □ 일반운영비

-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홍보비, 출장 여비 등으로 활용하는 지원금으로 항목별 자율적 편성·집행 가능

### [ 일반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]

| 구분      | 집행항목(요건)  | 집행기준   |
|---------|---|--|
| 임차비     |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 수요조사(워크숍, 간담회, 면담 등),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숙박비 지원 불가  |
| 회의수당    | ① 수요조사를 위한 FGI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<br>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운영위원 의결수당<br>③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 수당<br>④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 수당 | ▶ 최대 50만원 이내<br>(4시간 미만 최대 30만원 이내)<br>▶ 다만,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|
| 매식비     |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상 사유로 제공하는 급식비  | ▶ 1인 5만원 한도<br>▶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               |
| 자료 인쇄비  | ① 컨소시엄 협약기업 수요조사에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<br>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자료 인쇄비용<br>③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실비 인정  |
| 훈련생 모집비 | ① 훈련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, 광고,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. 단, 기념품 제작 불가<br>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·통신 등의 비용   | -  |

| 구분     | 집행항목(요건)   | 집행기준  |
|--------|--|---|
| 회계 정산비 | ① 컨소시엄 사업 회계정산 비용  | -   |
| 교육 훈련비 | 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다만, 환급과정,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 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
| 출장 여비  |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 관련 기관 방문 비용<br>②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 | ▶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을 준용하되, 해당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(지출증빙 구비자료 필요) |
| 일반 수용비 |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<br>②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<br>③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<br>④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| ▶ 홍보용 물품은 1인 5만원 한도 (훈련생 지급 불가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 보험료 | ① 전담자와 관련된 사회보험료 중 공동 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 | ▶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[ 사용 시 유의사항 ]

- ▶ 현금, 상품권, 주류 등 지원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· 임차 지원 불가
- ▶ 홍보용 물품은 훈련생, 전담자 또는 기관 내부인력에게 지급 불가
- ▶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, 전기, 상하수도료, 정보통신비용, 수료증 및 출석부 제작비용 지급 불가

## □ 훈련시설비

- 훈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·확장·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

### [ 시설비 지원 및 집행기준 ]

| 지원 가능항목   | 지급 불인정 항목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,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, 개축, 확장,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</li><li>◆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증축, 개축, 확장,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</li><li>◆ 컨소시엄 사업 전용 건축물의 휴게 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 시설에 필요한 비용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·개축비·임차비·유지 보수비</li><li>◆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 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</li></ul> |

## □ 훈련장비비

- 훈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·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

### [ 장비비 지원 및 집행기준 ]

| 지원 가능항목   | 지급 불인정 항목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책상, 의자, 에어컨, 온풍기, 전자교탁 프로젝터, 스크린, 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, 유지, 보수 등을 위한 비용, 장비 임차를 위한 리스료</li><li>◆ 협약기업 및 교육훈련 실적 관리,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,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(온라인 LMS 포함)</li><li>◆ 실습용(분해·조립 등) 차량 운반구 구입 및 수리 비용</li><li>◆ 행정업무용 사무장비, 냉온풍기 등의 편의 장비의 구입, 유지·보수에 필요한 비용 (전담자 수, 사업수행 공간 등을 고려)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유류비, 소모성용품, 실습재료 구입 비용</li><li>◆ 컨소시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TV, 냉장고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, 유지·보수에 필요한 비용</li><li>◆ 업무용·통학용·장비수송용 차량, 법령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, 유지·보수에 필요한 비용</li></ul> |

## □ AI확산지원비

- AI 확산과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개발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세미나, 강연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

### [ AI확산지원비 지원 및 집행기준 ]

| 집행항목(요건)   | 집행기준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AI 확산을 위한 세미나, 강연 등에 소요되는 비용</li><li>◆ 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(임차비) 실비 인정</li><li>▶ (강사료 및 여비) 기관 내부 기준 준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다만, 내부전문가일 경우 1/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,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</li></ul></li><li>▶ (보조인력 활용비)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30% 한도</li></ul>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기업진단, 워크플로 분석 및 재설계, 훈련 로드맵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(전문가 수당) 1회 1인당 30만원 이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다만, 내부전문가일 경우 1/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,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</li></ul></li></ul>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PBL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</li>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(과정개발 전문가 수당) 과정당 최대 210만원 이내</li></ul>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 |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외부(PM)(필수)</th><th>외부(직무,HRD)(선택)</th><th>협약기업 내부(필수)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00만원</td><td>60만원</td><td>50만원</td></tr></tbody></table>   | 외부(PM)(필수)  | 외부(직무,HRD)(선택) | 협약기업 내부(필수) | 100만원 | 60만원 | 50만원 |
| 외부(PM)(필수)   | 외부(직무,HRD)(선택)   | 협약기업 내부(필수)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100만원  | 60만원   | 50만원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◆ 기타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등</li>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(멘토 수당) 과정당 최대 100만원 이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다만, 공동훈련센터 및 협약기업 소속 내부전문가일 경우 1/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, 해당 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</li></ul></li><li>▶ (기타) 강사비, 재료비, 다과비 등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훈련비로 갈음 (NCS 지원단가 300%)</li><li>▶ 운영기관에서 편성한 실비에 대해 지원 가능</li></ul>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
### ◆ 멘토 자격요건

1. (경력 2년) AI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산업체, 학계,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, 강의 또는 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2. (석사 + 경력 1년) AI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(수료, 수료예정 포함)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3. (현직자) AI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등에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훈련과정 설계·개발, 강의 등과 관련한 직무 경력이 있는 자

## 훈련비용

| 지원항목   | 지급기준  |
|--------|---|
| 훈련비    | 수료인원 × 훈련시간 × 지원단가(NCS 기준단가 300% 정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비/숙식비 | ▶ 1일 식비: 5,000원, 숙식비: 14,000원, 월 330,000원 한도 내 지원<br>(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) |
| 지급·정산  | 훈련 종료 후 사후지급(공단 소속기관)   |

※ 유급훈련의 경우 임금의 일부 별도 지급

※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외의 기업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의 80%만 지원

###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

○○○○○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라 한다)와 □□□□□(이하,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」(이하 “컨소시엄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관의 역할)**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

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 조사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
2.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·운영 등 지원
3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, 컨소시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.

**제3조(훈련비용에 관한 약정)** ① (사업주훈련 환급방식)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이 경우 협약 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

② (선지급 방식)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본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2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 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④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
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
3.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

**제4조(성실의무)**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협약기간)**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컨소시엄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 (협약서 복사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문서(스캔본 파일)로 보관 가능)

20 년 월 일

(공동훈련센터)

○○○○○

(참여기관)

□□□□□

주 소 :

주 소 :

대표자 :

대표자 :

(인)

**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**

※ 첨부서류 : [첨부1]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

##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|
| 회사명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대표자명    |  |
| 주소(본사)   | 우편번호(      -      ) |              |  |         |  |
| 업 태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업 종          |  | 상시근로자수  |  |
| 담당자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HRD부서명  |  |
|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| 사무실:<br>휴대폰: |  | FAX     |  |
|          | 전자우편 주소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홈페이지 주소 |  |
| 고용보험관리번호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
【 기타 사항 】